## 《증보문헌비고》(레고)를 통하여 본 우리 민족의 우수한 혼례풍습

김 창 길

우리 민족은 오랜 옛날부터 한강토에서 하나의 피줄,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화목하게 살아온 지혜롭고 애국심이 높은 민족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동방례의지국으로 불리워왔으며 고유한 미풍량속을 자랑하여 왔습니다.》(《김일성전집》 제4권 412폐지)

민족고전 《증보문헌비고》(례고)는 조선봉건왕조말기에 편찬되여 출판된 책으로서 모두 250권 50책으로 되였다.

이 글에서는 《증보문헌비고》(례고)에 반영된 우리 민족의 우수한 혼례풍습에 대하여 서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먼저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우리 나라 고대사람들의 혼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우리 나라에서 사람들사이에 맺어지는 혼인은 오랜 력사적과정에 걸쳐 변천되여왔다. 우리 나라 고대사람들은 혼례를 진행하는데서 간소화하였지만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고 상하면서도 정중하게 하였다.

《〈진한〉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례의에서 남녀의 구별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며 《〈동옥저〉에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법은 녀자의 나이가 10살이면 이미 서로 언약하고 사 위네집에서 녀자를 맞아들일것을 허락하여 그를 맞아들여 키워서 성장한 다음 본가에 보 내면 녀자집에서는 얼마간의 물건이나 돈을 받고 딸을 남자집에 돌려보낸다.》라고 하였다. (《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 36권 사혼례)

우의 자료들을 통하여 고대사람들의 혼례는 남자측에서 일정한 대가를 너자측에 지불하고 너자를 데려오며 그 어떤 강요나 지배에 의해서가 아니라 당사자인 본인들의 결심에 따라 혼인을 맺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는것을 알수 있다.

우리 나라 고대사람들의 혼례는 번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구애되지 않고 고상하면서도 단순하였지만 사회적 및 경제적처지에 따라 혼례의 의도, 내용, 규모 등이 달랐다. 즉특권층의 혼례는 환락을 누리고 권력과 재력을 시위하는 기회로 되였다면 인민들의 혼례는 남녀의 결합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간소하고 건전하게 진행되였다.

우리 나라 고대사람들은 같은 성씨끼리의 혼인이 후대에게 미치는 부정적후과를 잘 알고 그것을 건전한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예맥》에서는 《성이 같으면 혼인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교》 권89 례고36)

고대사람들은 오랜 생활체험을 통하여 근친간의 혼인이 후대에게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인식한데로부터 같은 혈족간의 혼례를 반대하였다. 고대사람들은 혼례를 진행하면서 친족간의 혼인을 삼가하고 례의에 따라 소박하게 혼례식을 진행하였으며 일부일처제적소 가족을 형성하고 부부사이에 신의를 두터이하고 서로 도와주는 좋은 풍습과 친족간의 혼인을 삼가하는 좋은 풍습을 가지고있었다.

다음으로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삼국시기 혼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

여있다.

삼국시기 사람들은 혼례에서 경제적타산을 앞세우지 않고 서로의 신의와 애정을 기 본으로 하여 혼례를 진행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 의하면 《고구려사람들은 혼인에 앞서 고기와 술을 보낼뿐이다. 재물이 있고 없는가에는 관계하지 않고 장가가는데 혹 재물을 받는자가 있으면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였다.》라고 하였다

《당서》에서는 《고구려풍습은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폐백을 리용하지 않았으며 폐백을 받는자가 있으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긴다.》라고 하였으며 《신라사람들은 혼인을 맺고 시집, 장가가는 례의로 오직 술을 마시고 음식을 먹을뿐 경하고 중한것은 부유하고 가난한 것에 따랐다.》라고 하였다.《중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사혼례)

우의 기록을 통하여 삼국시기 사람들의 혼례에서는 례물을 갖추어 주고받는것과 같은 허례허식이 필요치 않았다는것을 알수 있다.

다만 남자가 먼저 녀자집에 장가드는 조건에서 남자집에서 녀자집에 고기와 술을 보내여 혼례식을 축하하는것으로 그치였다.

삼국시기 혼인 상대자들사이의 교제와 결합이 자유롭게 진행되였다는것은 고구려에서 미천한 온달에게 공주가 시집가고 백제의 서동이 선화공주와 만나 혼인을 맺었다는 사실 등을 통하여서도 알수 있다.

고구려를 비롯한 삼국시기 인민들은 혼례를 치른 다음 부부간의 거처지를 정하는것을 매우 중시하였다.

《고구려에서는 혼인한 다음 부인집에 가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자식이 크면 남자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였고 《삼국지》에서는 《고구려는 그 풍속에 남녀가 장가들고 시집같 때 이미 날자를 정하였다고 말을 하면 녀자집에서는 작은집을 큰 집의 뒤에 만들어놓고 그것을 〈사위집〉이라 하였다. 사위가 날이 저물면 신부집의 지게문밖에 이르러 무릎을 꿇고 앉아 절을 하고 이름을 대면서 〈빌건대 딸을 데리고 잠자려고 합니다.〉라고 한다. 이와 같은것을 두세번 반복하면 녀자집의 부모들이 듣고 나와서 데리고 들어가서 작은 집안에서 잠자게 한다. 곁에 돈과 비단을 놓아두며 자식을 낳아 크게 자래우면 인차 안해를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온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사혼례)

우의 기록을 통하여 고구려사람들은 혼례식을 진행한 다음 녀자집에 거처를 정하고 살면서 자식을 낳아 기르다가 아이가 큰 다음 자기 집에 돌아왔다는것을 알수 있다. 이때 남자의 집에서는 약간한 고기와 술을 녀자집에 보내줄뿐이다.

다음으로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고려시기 혼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고려봉건사회전반기에는 《혼례에서 비교적 남녀가 스스로 부부가 되는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송사》 권487 렬전 외국)

남녀가 스스로 부부가 되는것을 금지하지 않았다는 기록은 이 시기 혼인이 고려후반 기의 혼인의례와 다르게 맺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고려시기 혼례는 고구려를 비롯한 앞선 시기와 같이 간단하고 소박하면서도 정중하게 치르어왔다. 《혼인하는 날 저녁에 친척들이 모여 상 하나를 차려놓고 술 3잔을 돌리는것 으로 혼례를 끝냈을 뿐이였다.》라는 기록은 고려인민들은 번잡하고 허례허식적인것을 추 구하지 않고 혼례식을 간단하게 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용재총화》권1)

그러나 귀족들이나 선비들은 혼례의례에서 돈이나 문물을 비롯한 폐백을 보내여 혼 인하는 폐단이 우심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고려후반기에 이르러 더욱 우심해졌는데 돈이 나 문물들을 마련할수 없었던 일반 백성들속에서는 장가들고 시집가는 때를 놓치는 현상 들이 나타났다.

고려시기에는 혼인대상자선택에서 엄격한 계급적 및 신분적제한성이 있었다. 고려에서는 이전시기와 마찬가지로 같은 신분인 사람들끼리만 혼인할수 있었으며 그런 경우에도 성이 같은 사람끼리 혼인을 금지하였다.

《의종왕 원년(1147)에 성이 같은 남녀의 혼인을 금지하였다.》,《6촌형제이상으로 혼 인관계를 맺는자들은 다 그것을 금지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사혼례)

그러나 일부 봉건지배계급들속에서는 가까운 친척들사이에 혼인을 맺는 근친혼풍습이 나타났다. 당시 이러한 근친혼풍습은 사회적비난을 받았고 여러차례 법적으로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졌으나 좀처럼 금지되지 못하였다.

고려시기 사회적으로 녀자들이 재가하는것을 일정하게 허용하였으며 후시기에 비하여 구속도 상대적으로 적었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량반지배계급으로 《6품이하관리의 처, 첩으로 남편이 죽어 3년이 지난 다음 재가해도 행실을 잃지 않았다. 산기이상의 첩과 6품이상관리의 처, 첩으로 자기가 원하여 절개를 지키는자는 가문과 마을을 표창하며 동시에 상을 내려주자는 제의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사혼례)

이것은 어디까지나 고려말에 귀족통치배들에 대한 문제였으며 내용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재가현상이 전승되여오는 관습에 따라 진행되고 그것이 별로 시비되지 않았던 사실을 보여주며 다른편으로는 유교교리에 따라 점차 제한하자는것을 설교한데 불과한것이다.

고려시기 근로인민들은 축첩행위를 허용하지 않았으며 그것을 비도덕적인 행실로 배격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 기록된《경효왕시기 태부경 박유가 축첩제도를 제기하였으나 의논되지 못하였다.》라는 자료는 당시 그러한 행위가 증오, 배격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다음으로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조선봉건왕조시기 혼례풍습에 대한 자료들이 기록되여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배들은 봉건유교도덕적인 혼례제도를 끌어들이면서 관혼상 제를 체계화한 《례서》들을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여러가지 《의례》들을 규정하였다.

우선 이 시기 처가살이 혼례풍습이 점차 쇠퇴되고 당일잔치가 보편화되였다.

조선봉건왕조초기에는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남자가 장가들어 일정한 기간 처가에서 생활하다가 안해와 자식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풍습이 유지되였다.

《태종실록》에서 《처가살이를 하므로 자손들이 외가에서 자랐기때문에 본가의 중함을 모른다.》라고 한것은 그 실례의 하나이다.(《태종실록》 권27 14년 기묘)

그러나 점차 봉건량반들은 처가살이풍습을 배격하고 당일잔치(친영)를 주장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는 임금이 지시하기를 《우리 태종대왕은 옛날에 제정한것을 사모하여 왕자, 왕녀가 혼인하는것을 다 〈친영〉하게 하여 사대부들이 보고 본받도록 하였 다. 근래에는 례의가 어지러워져서 리행하기가 힘들어졌고 남자가 녀자집에 들어가 천지 자연의 도를 역행하니 옳겠는가.》라고 기록되여있다.

이 기록을 통하여서도 당시 《친영》을 장려하도록 주장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세기 즉 1518년(중종 13년)에는 선비, 백성들도 《친영》을 허락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서는 《선비, 백성들도 〈친영〉례를 허락하였다.》고 하였으며《유학 김치운이 처음으로 〈친영〉례를 행하여 드디여 례로 정하게 되였다.》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사혼례)

이로부터 16세기초에 이르러 《친영》레가 제정되였으며 일반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친영》하는 풍습이 실시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러나 특권충관리들속에서는 처가살이풍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며 그러한 풍습은 서서히 변하는것으로서 강제로 고칠것이 못된다고하였다. 이로 하여 처가살이 풍습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성행되자 사림파량반들은 《친영》론을 가지고 훈구파량반들의 부패타락과 무능을 공격하였다.

이렇게 처가살이풍습과 《친영》풍습문제를 둘러싸고 진행된 복잡한 론의끝에 두가지 절충형태인 《반친영》풍습이 일정하게 보급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서는 《선비, 백성집들의 혼례는 이전과 좀 달라져서 사위가처음에 신부집에 가면 신부가 나와서 교배합근례를 행하고 다음날 시부모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것을 〈반친영〉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며 《우리 나라 혼인풍습에서 신부가 3일후 시부모와 만나는것을 〈3일대반〉이라고 한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 권89 례고36)

16세기 중엽에 이르러 《반친영》의 보급은 처가살이풍습을 없애는데서 하나의 전진이였다. 이러한 처가살이풍습은 18세기이후에야 없어지게 되였으며 《친영》 즉 당일잔치가 보편화되였다.

또한 이 시기 혼례풍습에서 《동성동본불혼》풍습이 철저히 지켜졌다.

14~15세기이후 생산력의 발전, 인구의 증대에 따라 동족성원들이 량적으로 늘어나고 거주지역이 확대되자 많은 수의 동족성원들속에서 그 혈통의 멀고 가까운것을 성씨로서만 표기하기가 어렵게 되였으며 동족의 계통표식으로서 본관의 분화가 촉진되였다. 삼국시기부터 성을 대신한 본관이 사용되였는데 그것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된것은 14세기말부터였다.

본관이란 시조의 고향 또는 조상들이 대를 두고 살아온 고장을 말하는데 그것을 본 관, 관향, 본적, 본향 등 여러가지로 표현하였다.

16세기까지는 성이 같아도 본관만 다르면 혼례를 하는 풍습이 있었다. 즉 성은 같으나 본이 다르면 혼인해도 되는것으로 인정하였던것이다.

그러나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같은 성에 다른 본관사이 혼인을 금지하였다.

《증보문헌비고》(례고)에서는 현종 10년(1669)《나라풍속에 성씨는 한가지이나 향관이만약 다르면 전례로 혼인이 통하였는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그것을 금지하였다.》라고 하였다.(《증보문헌비고》권89 례고36 사혼례)

우의 기록을 통하여 17세기 중엽이후 《동성이본》인 경우 혼인을 철저히 금지하였다 는것을 알수 있다.

또한 이 시기 혼례풍습에서 부부사이 불평등관계가 매우 심해졌다.

그것은 봉건유교사상과 도덕규범에 따라 녀자를 천시하는 남존녀비사상이 지배한데

있다. 고려말기에는 남편이 죽으면 3년이 지난 다음 녀자들이 재가할수 있었고 조선봉건 왕조초기에만 하여도 재가하는데 대하여 법률적인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5세기 후반기부터 녀성들이 재가하는 문제는 부녀들의 정절문제와 결부되여 그것이 온당치 못한 행위로, 악덕으로 규탄받게 되였다.

1477년(성종 8년)에 너자가 한번 시집가면 종신토록 재가하지 말며 재가한 너자의 자식들은 벼슬을 시키지 말데 대한 지시가 있었다.

그러나 당시 이러한 페단을 부녀들을 구속하고 억압하는 행위로 보면서 그러한 현상을 극복할데 대한 여러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였다.

녀성들의 재가문제는 그후 400여년간 계속 론의되여오다가 갑오개혁에 의하여 비로 소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다.

이처럼 《증보문헌비고》(례고)는 지난 력사적기간 우리 민족의 혼례풍습과 관련한 자료들을 적지 않게 기록하고있으므로 혼례풍습의 변천과 해당 시기 혼례풍습을 리해하는데 일정한 도움을 준다.

우리는 민족고전유산을 더 많이 발굴정리하여 민족의 우수성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 것이다.